

## 2025 환경창업대전(Eco<sup>+</sup> Start-Up Challenge 2025) 참가자(팀) 모집 공고

녹색산업 분야 창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확산하고 유망 환경창업 아이디어·창업자 발굴을 통해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2025 환경창업대전”을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3월 1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I 개요

#### □ 목적

- 녹색산업 분야\* 현안 사항에 대한 국민적 관심 유도 및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 발굴로 창업 문화 확산 도모
- 유망 환경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스타 창업기업으로 육성하고 녹색산업 분야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정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녹색융합 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녹색산업(붙임 1 참조)

#### □ 내용

- (접수기간) 2025.4.1.(화) ~ 5.2.(금), 18:00까지  
※ 접수기간 외에는 '환경창업 아이디어 상시 모집' 신청 가능(참고 1 참조)
- (접수방법) 에코스퀘어 누리집 온라인 신청  
※ 우편(서면)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주 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주 최) 환경부

## II

# 모집부문 및 참가자격

### □ 모집부문 및 자격

공모부문	참가자격
아이디어	통합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
스타기업	통합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통합공고일 : '도전! K-스타트업 2025' 공고일(25.2.4)

#### < 2025 환경창업대전 참가 자격 >

공통기준 (판단기준)	<p>•통합공고일(25. 2. 4.)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li> <li>•(창업이력 제외 사항) 아래 ①~③이력은 본 대회 '참가 자격'과 '제외 대상'의 기준 요건 확인 시 포함되지 않음</li> </ul>
	<p>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p> <p>② 「창업 및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창업이력 제외대상'</p> <p>③ 통합 공고일 기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p>
	<p>구분</p> <p>세부자격</p>
예비 창업자(팀)	<p>•신청자(팀장)는 통합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p> <p>※ 팀원은 예비창업자 또는 보유한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18. 2. 4. 이후 창업)인 창업 기업 대표자이어야함</p>
창업기업 대표자	<p>•통합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18. 2. 4. 이후 창업)이면서,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이하 창업기업의 대표자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함, 창업기업 확인서* 必)</p> <p>※ 공동대표, 각자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이 대회 참가자격.참가제외 기준을 충족해야함</p> <p>※ 대회 신청기업 외 보유 사업자가 있을 경우 모든 사업자가 7년 이내('18. 2. 4. 이후 창업)이어야 함</p>

\* '창업기업 확인서'는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을 통한 발급본만 인정하며, 공고일(2.4.) 이전에 발급한 경우 유효기간 내에 공고일이 포함될 경우에만 인정

### □ 참가 제외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사회적 성격의 창업 아이템
-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2016 ~ 2024" 기 수상자 (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 (왕중왕전 특별상.입상자 제외)
- '18~'24년도 "환경창업대전" 수상팀(자) 및 아이템
- 통합공고일 기준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과거 他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 받은 자
  - \* 他 창업경진대회는 민간·공공·대학에서 주최한 모든 '창업경진대회'와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포함
  - \*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한정하며, 기술개발, 실증 등 사업화 목적의 자금과는 별개
  - \* 예비창업팀의 경우 '팀장', 기 창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창업기업' 수상 내역 확인
- 대회 참가 신청 아이템 및 기업이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거나 침해 관련 소송 등의 재판 진행 중인 자(기업) 또는 아이템

향후 참가자격 부적격 확인 시 자격 박탈 및 상금이 환수될 수 있음

### Ⅲ

##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5. 4.1.(화) ~ 5.2.(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에코스퀘어 누리집(<https://www.ecosq.or.kr>) 또는 메타버스(<https://zep.us/play/2Qmk3P>)를 통한 온라인 접수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의 신청자로 인해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일 전 미리(2~3일 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 문의 : '2025 환경창업대전' 운영사무국(070-4285-2205)
- ※ 시스템(회원가입 및 로그인) 문의 : 에코스퀘어(02-2284-1481)

□ **제출서류** (붙임 4 참조)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가점 증빙서류 포함)는 신청 시 제출, 발표평가 대상자에 한해 추가서류 제출
  - 접수자 제출서류(1차 제출) : ① 참가신청서, ② 사업계획서(별첨), ③ 가점 증빙서류,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⑤ 참가 서약서, ⑥ 참가 자격 증빙서류

- ◆ 사업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자격 증빙을 위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해 인정
  - '사업자등록증'은 기존 발급본 인정, '창업기업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 공고일이 포함될 경우 인정(단, 유효기간 내에 창업 업력이 7년을 초과하면 불인정)
- ◆ 접수 마감까지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제외
- ◆ 접수 마감까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 제출 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서류/발표) 대상에서 제외

※ 각 행정청의 소요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서류 발급에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공고 확인 후 즉시 준비 권장

-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든 서류의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후 제출
  - 발표평가 대상자 제출서류(2차 제출) : ① 발표자료, ② 발표영상, ③ 신분증 사본, ④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 ◆ 발표영상은 5분 이내 분량으로 제작하되, 참가팀 대표 직접 발표 원칙
- ◆ 발표평가 대상자 제출서류는 대상자(팀)에 한해 별도 안내 예정

## IV

# 평가절차 및 내용

### □ 평가절차



※ 대내외 사정에 따라 평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1차평가)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서면 평가(125팀, 5배수 선발)  
※ 가점은 서류평가 점수에만 적용
- (2차평가) 발표자료, 발표영상,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비대면 발표평가(50팀, 2배수 선발)  
※ 합격자 대상으로 창업아이템 보완 등 인큐베이팅을 통해 사업계획 고도화
- (3차평가) 멘토 의견서, 발표자료, 사업계획서 기준으로 대면 발표평가(25팀, 수상팀 최종 선발)  
※ 창업보육기관의 인큐베이팅을 통해 고도화된 창업아이템 최종 평가
- (최종경연) 3차평가 결과 부문별 상위 4팀(아이디어 4팀, 스타기업 4팀)에 대한 국민 참여 발표 경연을 개최하여 최종훈격 결정

### □ 평가내용

- (평가기준) 사업성·기술성을 바탕으로 종합 평가(붙임 2 참조)

구분		내용
평가 기준	서류평가	- 문제인식, 해결방안 등
	발표평가	- 시장성, 혁신성, 성장성 등
	공 통	- 환경적 기대효과(녹색혁신성장 가능성 등), 팀구성(창업역량)
가 점		- 아이템 관련 지적재산권 보유, 청년창업(대표자 기준),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붙임 3 참조)

- (평가방법) 서면 서류평가, 발표평가(2회, 비대면·대면) 진행 예정  
※ 대내외 사정에 따라 평가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V

## 시상 및 후속지원

### □ 시상규모

- (아이디어) 총 12팀 수상, 총상금 3,700만원 규모

구 분	훈격	부상(수량)	비고
대 상	환경부장관	상금 1,000만원(1)	최종경연 진출팀 (순위결정)
최우수상		상금 700만원(1)	
우 수 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상금 500만원(2)	
장 려 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상금 200만원(2)	-
입 선		상금 100만원(6)	

※ 상금은 세액이 포함된 금액임

- (스타기업) 총 13팀 선발, 총상금 7,100만원 규모

구 분	훈격	부상(수량)	비고
대 상	환경부장관	상금 2,000만원(1)	최종경연 진출팀 (순위결정)
최우수상		상금 1,000만원(1)	
우 수 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상금 700만원(2)	
장 려 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상금 500만원(3)	-
입 선		상금 200만원(6)	

※ 상금은 세액이 포함된 금액임

- (후속지원) 수상팀 대상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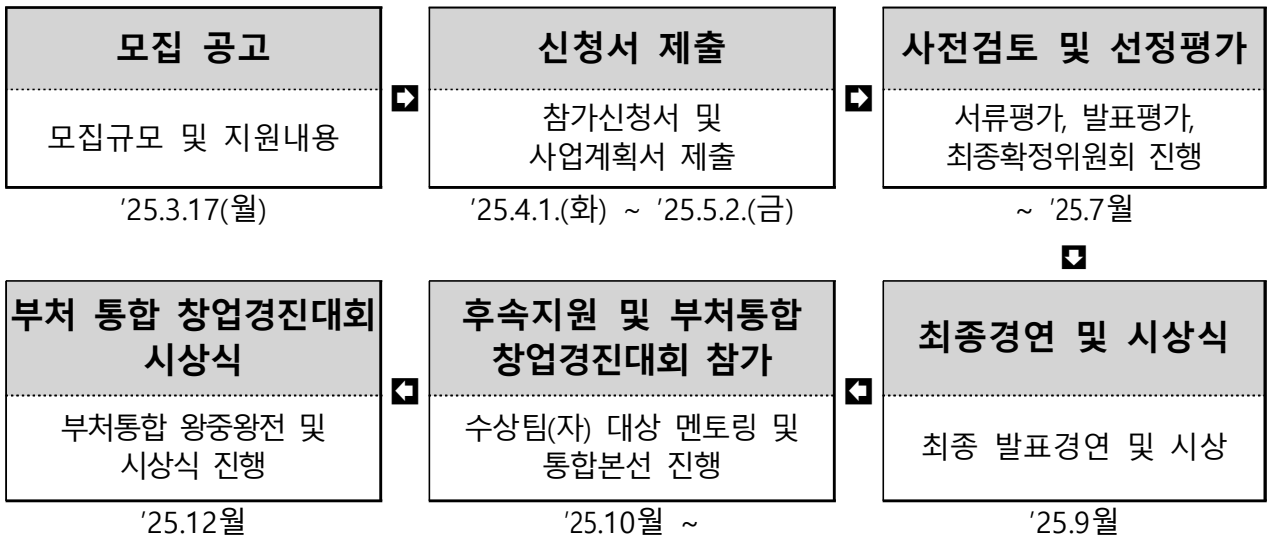
- 교육, 멘토링, IR역량강화 등 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투자기관(VC, 액셀러레이터, 엔젤투자자 등) 설명회를 통한 상담 연계

- (특 전)

- 부처 통합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2025」 진출팀 추천(16팀)  
 ※ 「2025 환경창업대전」 최종 수상팀 중 부문별 상위 8팀, 총 16팀 추천(단, 스타기업 부문은 업력 3년 이내 기업만 진출 가능)
- 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환경벤처센터 입주희망자에 한하여 선정평가 시 가점 2점 제공
-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사업화 지원사업) 지원 시 서류평가 면제 자격 부여

## VI

##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VII

## 유의사항

### □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시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창업기업 확인 신청 서류가 미비하여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소요되는 준비기간은 그 이상이 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창업기업 확인 신청 필요
-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이 늦어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 신청·접수 관련 귀책 사유는 참가자 또는 참가기업에 있으며, 발급기관(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신청방법)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cert.k-startup.go.kr)
  - \* 제출서류, 발급 처리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확인 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신청문의) 1811-3773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콜센터)

## □ 지식재산권 보호 및 보안 관련

-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팀) 본인에게 있음
- (지식재산권 보호) ‘2025 환경창업대전’에서 공개된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공개 이전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야 함
- ※ 아이디어가 출원 전에 공개된 경우, 공개된 시점부터 **12개월 이내(디자인은 6개월 이내)** 공지 예외 적용 주장을 통해 출원 가능

### < 아이디어 공지 예외 주장에 관한 공지 >

출원인이 행한 공지행위로 인해 특허 출원 시 거절이유에서 제외되는 제도로 아이디어 제공자는 **아이디어가 공지 또는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법」 제30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또는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7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에 따라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있으며,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보호법」 제51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에 따라 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음

- (기술자료 임치제도) 핵심 기술 및 경영정보를 신뢰성 있는 기관에 보관하고, 분쟁 발생 시 임치물을 이용하여 개발 및 보유 사실 입증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관련 서비스 이용(유료)할 수 있음

### < 기술자료임치제도 관련 법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①수탁·위탁기업[수탁·위탁기업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임치(任置)하고자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은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수치인"(受置人)이라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임치기업"이라 한다)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아이디어 소유권자, 원본존재 및 보유 시점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영업비밀 보호센터(한국지식재산보호원)를 통해 관련 서비스 이용(유료)

<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관련 법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장 9조의2(영업비밀 원본증명)

①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이하 "전자지문"(電子指紋)이라 한다]을 등록할 수 있다

- (비밀준수) '2025 환경창업대전' 참가자(팀)의 아이디어는 운영기관의 보안규정, 평가위원의 보안서약 등을 통해 비밀유지

< 비밀준수 관련 법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차목 ①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선행기술조사) 수상자와 타 특허권자의 분쟁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평가 통과팀(50개팀)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가 최종확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모집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창업경진대회 신청자에게 있음
- 동 창업경진대회 공고문 및 관련 규정 위반사항, 필수서류(자격요건 등) 또는 사업계획서의 허위 기재 및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상금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지급된 상금의 환수와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동일 또는 유사한\* 창업아이템으로 2개 이상의 예선리그(참고 2 참조)에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신청한 예선리그 모두 탈락될 수 있음
  - \* 아이템에 적용된 핵심기술과 사업 BM, 목적 및 지향점을 종합적으로 판단
  - 다른 창업아이템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복참여 가능. 단, 통합 본선(참고 2 참조)에 진출 시 1개의 창업아이템을 선택하여 진출해야 함
  - ※ 예선리그별로 창업아이템 신청 한도·중복참여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기창업한 팀원 또는 타인의 창업아이템으로 대회 참여 불가, 해당 사항 적발 시 탈락될 수 있음
- 임금체불, 세금 체납,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환경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주최, 후원 등)하는 他 창업경진 대회와 중복수상 불가
  - \* 예시 : 「환경창업대전」과 「환경 ICT 아이디어 공모전(에코톤)」 두 대회 중 택일하여 참여해야 함
- 만 14세 미만의 참가자는 온라인 접수 시 본인인증이 어려울 경우 법적 보호자가 대신 접수할 수 있음. 다만 발표평가는 본인 직접 발표(보호자 발표 불인정)

# 붙임 1 지원대상 참고사항

## □ 관련 법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환경산업"이란 대기, 수질, 소음·진동, 생태계 등 환경 전반에 걸쳐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을 높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 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측정·예방·최소화·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나.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재활용 산업 등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의 보전·개선에 기여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다.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라. 그 밖에 환경의 보전·관리·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산업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녹색산업"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녹색산업 및 녹색연관산업의 범위) 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산업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사목의 바이오에너지·폐기물에너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의 수열에너지 생산·공급·이용과 관련된 산업
  3. 수소, 암모니아 및 바이오가스(유기성 폐기물 등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성된 기체를 정제한 가스를 말한다)의 포집(捕執)·운반·공급·이용을 위한 시설·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4. 이산화탄소의 포집·운반·격리 등 온실가스 처리·이용을 위한 시설·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5. 그 밖에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효율을 높이거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녹색산업과 연관된 설비, 부품, 자재, 장비, 금융, 교육·훈련, 유통, 정보화 및 서비스 등의 산업을 말한다.

## 붙임 2 평가기준

### □ 평가항목 및 배점

- 서류평가 : 창업아이템의 필요성, 혁신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

아이디어			스타기업		
항목	세부내용	배점	항목	세부내용	배점
-		100	-		100
문제 인식	창업아이템 필요성 창업동기, 열정 및 의지	20	문제 인식	문제인식 수준 창업아이템 개발 목표	10
해결 방안	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존 기술 대비 우수성	40	해결 방안	사업 확장 가능성 기존 기술 대비 우수성	30
성장 전략	시장 규모와 시장 경쟁력 계획의 체계성	20	성장 전략	경쟁시장에 대한 분석 단계별 사업계획	40
팀구성	대표자 창업역량 팀원 보유역량	10	팀구성	대표자 창업역량 팀원 보유역량	10
환경 연관성	녹색산업 분야 부합성 환경적 기대효과	10	환경 연관성	녹색산업 분야 부합성 환경적 기대효과	10

- 표준화\* 점수 산출 후 고득점순으로 선정(동점자 발생 시, 전원 선정)

\* 표준화 산식: (개별점수-분과평균점수)×(전체표준편차/분과별표준편차)+전체평균점수

- 발표평가 : 창업아이템의 우수성, 참가팀 역량 등 종합적으로 평가

아이디어			스타기업		
항목	세부내용	배점	항목	세부내용	배점
-		100	-		100
문제 인식	창업아이템 필요성 창업동기, 열정 및 의지	20	문제 인식	문제인식 수준 창업아이템 개발 목표	10
해결 방안	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존 기술 대비 우수성	40	해결 방안	사업 확장 가능성 기존 기술 대비 우수성	30
성장 전략	시장 규모와 시장 경쟁력 계획의 체계성	20	성장 전략	경쟁시장에 대한 분석 단계별 사업계획	40
팀구성	대표자 창업역량 팀원 보유역량	20	팀구성	대표자 창업역량 팀원 보유역량	20

- 표준화\* 점수 산출 후 고득점순으로 선정(동점자 발생 시, 서류평가 점수가 더 높은 창업아이템 선정)

\* 표준화 산식: (개별점수-분과평균점수)×(전체표준편차/분과별표준편차)+전체평균점수

## 붙임 3 가점 및 제한 대상

### □ 서류평가 가점 항목

가점 세부 항목	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한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보유 중인 자</li> <li>※ 전용실시권을 포함하되 출원 중인 건은 제외 (다수의 지재권도 1점 한 건으로만 인정)</li> </ul>	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분야 청년* 창업자</li> <li>※ 청년(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대표자가 속한 창업과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li> </ul>	1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사회적 기업 인증서를 보유한 기업</li> </ul>	1점

※ 가점은 최대 2점까지 부여하며, 서류평가 결과에만 반영(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 □ 수상 제한 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창업기업이 휴·폐업 중인 경우
- 전년도와 당해년도에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 받은 경우

## 붙임 4 제출서류 안내

구분	제출서류	
아이디어	접수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가 신청서(온라인 작성), 사업계획서(양식 다운로드)</li> <li>■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작성)</li> <li>■ 참가서약서(온라인 작성)</li> <li>■ 가점 및 기타 증빙서류(해당 시)</li> <li>■ 팀원 확인서(붙임 5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원 확인서에 없는 팀원은 추후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 내 팀 구성과 동일하게 작성 필요</li> </ul> </li> <li>■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표자 및 팀원의 사업자 등록 및 폐업 사실 여부 확인</li> <li>2) 예비창업자(팀)의 '총사업자등록내역<sup>①</sup>' 발급이 불가할 경우, '사업자등록사실여부<sup>②</sup>(5년 이전 증명 포함)'로 제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발급절차 : 국세청 홈텍스→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li> <li>② 발급절차 : 국세청 홈텍스→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li> </ul> </li> <li>3) 폐업사실 있는 경우에는 폐업사실증명원<sup>①</sup>, 대표자 명의의 다른 사업체 중복 보유 경우에는 해당업체 사업자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발급절차 : 국세청 홈텍스→민원증명→폐업사실증명</li> </ul> </li> </ol> </li> </ul>
	발표평가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 신분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학생증 불가)</li> </ul> </li> <li>■ 국세<sup>①</sup>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sup>②</s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발급절차 : 정부24→자주 찾는 서비스→납세증명</li> <li>② 발급절차 : 정부24→자주 찾는 서비스→지방세 납세증명</li> </ul> </li> </ul>

스타기업	접수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가 신청서(온라인 작성), 사업계획서(양식 다운로드)</li> <li>■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작성)</li> <li>■ 참가서약서(온라인 작성)</li> <li>■ 가점 및 기타 증빙서류(해당 시)</li> <li>■ 창업기업 확인서(창업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기업 확인 시스템(cert.k-startup.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발급에 2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 필요</li> </ul> </li> <li>■ 팀원 확인서(붙임 5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원 확인서에 없는 팀원은 추후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 내 팀 구성과 동일하게 작성 필요</li> </ul> </li> <li>■ 4대보험 가입자명부(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대보험 가입자명부에 없는 팀원은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 내 팀 구성에 작성하지 않은 팀원은 추후 인정 불가</li> </ul> </li> <li>■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li> <li>-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li> </ul> </li> <li>■ 투자유치내역 확인서(붙임 6 참조)</li> </ul>
	발표평가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표자 신분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학생증 불가)</li> </ul> </li> <li>■ 국세①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발급절차 : 정부24→자주 찾는 서비스→납세증명</li> <li>② 발급절차 : 정부24→자주 찾는 서비스→지방세 납세증명</li> </ul> </li> </ul>

- ※ 본 사업계획서 작성 내용과 증빙서류 상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거나 누락, 허위 기재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상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 공동대표, 각자 대표인 경우 공동·각자 대표자 서류 포함하여 제출
-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든 서류의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후 제출

## 「2025 환경창업대전」 팀원 확인서

“2025 환경창업대전”에 참가하는 팀원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참가팀	인원수			
창업아이템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확인 서명
홍길동	00.00.00.	010-0000-0000	@	출력 후 사인

※ 대표자를 제외한 팀원 전원 작성

년    월    일

팀장 : (서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붙임 6 투자유치내역 확인서

### 투자유치내역 확인서

“2025 환경창업대전”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투자유치를 받았음을 확인하며, 만약 제출한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수상 취소, 상금 환수 등 조치가 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번호	투자 유치 일자 <sup>1)</sup>	투자 기관명 (펀드 운용사)	펀드 명칭	소재 국가	이해 관계인 <sup>2)</sup>	투자 기관 유형 <sup>3)</sup>	투자금 입금 일자 <sup>4)</sup>	투자금 입금액 (원) <sup>4)</sup>	신주/ 구주 <sup>5)</sup>	투자 유형 <sup>5)</sup>

- 1) 투자유치일자 : 투자계약서 상 일자
  - 2) 이해관계인 : 투자계약서 상 명시된 이해관계인 전원을 기입
  - 3) 투자기관유형 : 창투자, 신기사,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PEF, 창업기획자 등
  - 4) 투자금 입금일자 및 입금액 : 법인계좌에 투자금이 실제 입금된 날짜/금액
  - 5) 신주/구주, 투자유형 : 신규발행 주식(보통주, 우선주), CB, BW 등 구분
- \* 현물투자와 구주투자는 실적에서 제외 예정

년      월      일

대 표 자 : (서명)

신청기업: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참고 1 상시 모집

### □ 운영개요

- (운영목적) 환경창업 지원사업 모집공고 기간 외 발생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지원으로 녹색산업 스타기업 육성 확대

연중 상시 접수	
대회 기간 내('25.4월)	대회 기간 외('25.1~3월, '25.5월~)
당해연도 환경창업대전 참여	창업 멘토링(25) + 차년도 환경창업대전 참여 독려(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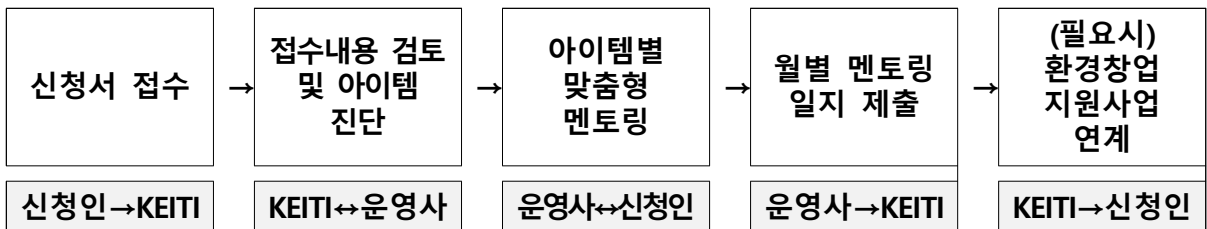
- (모집부문) 녹색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 접수방법

- (접수방법) 환경창업 아이디어 상시 모집 누리집([www.ecostartup.kr](http://www.ecostartup.kr)) 또는 메타버스(<https://zep.us/play/2Qmk3P>)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멘토링 신청서(별첨), 사업계획서 또는 소개자료(자유양식)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 주요내용

- (지원내용) 녹색산업 분야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환경창업 지원사업 정보 및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여 창업 역량 제고  
※ 사업소개자료, 온라인 미팅 등을 통해 사업현황을 진단하고 창업 교육, 사업계획 보완, IR자료 고도화, 발표 코칭 등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운영절차) 연중 상시



※ 신청 시기와 아이템 상황에 따라 전문가 멘토링은 생략할 수 있음

### □ 유의사항

- 참가자격, 유의사항 등의 조건은 '2025 환경창업대전' 공고문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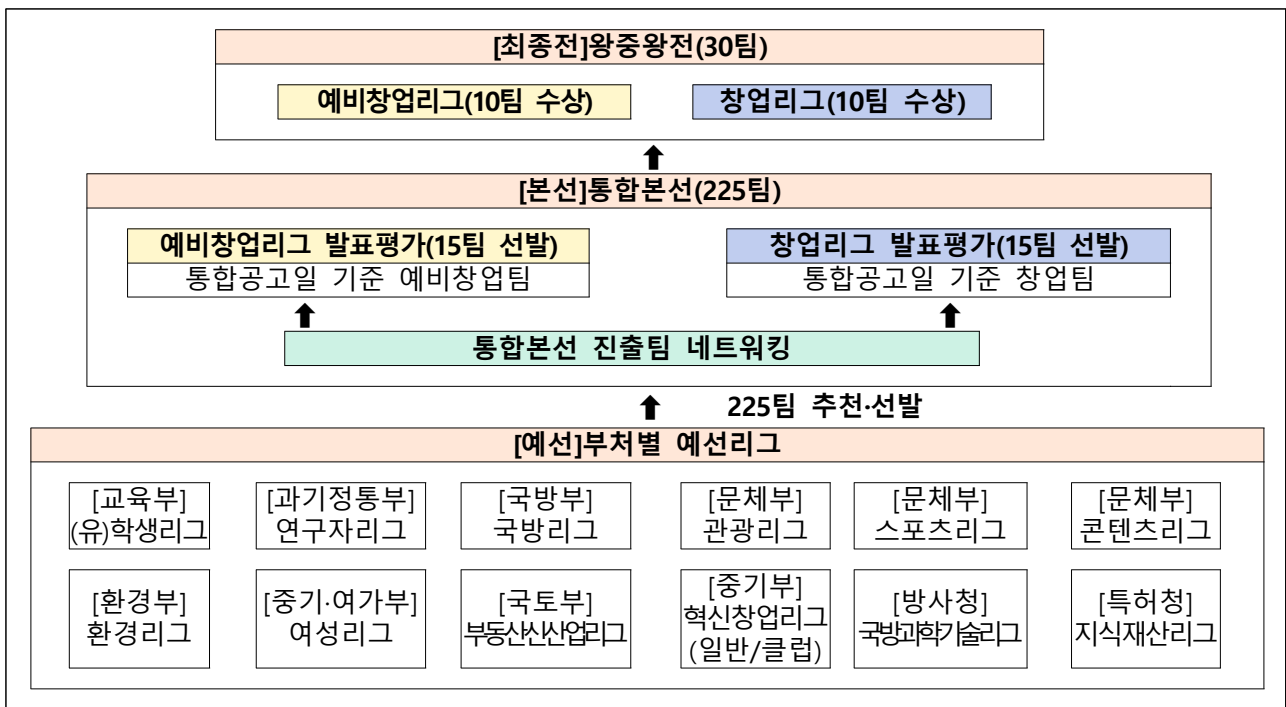
## 참고 2 부처통합 창업경진대회

“작은 시작, 위대한 변화, 도전! K-스타트업!”

- **(목적)** 범부처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유망한 (예비)창업팀을 발굴·포상하여 親창업분위기 확산
- **(대회 운영 방식)** 참여 부처별 예선리그를 거쳐 우수 참가팀을 선발·추천하고, 통합본선\*과 왕중왕전 평가를 통해 최종 수상자 선정

\* 통합본선 단계부터는 진출팀 창업 여부(통합 공고일 기준)에 따라 예비창업리그와 창업리그로 구분하여 진행

< 도전! K-스타트업 2025 운영 체계 >



### □ 대회 운영 일정

참가자 모집	예선	통합본선 추천	통합본선 평가	왕중왕전
부처별 예선리그 접수	부처별 예선 (서류·발표평가 등)	예선리그별 추천, 통합본선 개막식(9월초)	왕중왕전 진출팀 결정 (발표평가)	최종 20팀 순위 결정 (발표평가)
2월~6월말	~7월 말	8월 초	10월 중	12월 2주

\* 대회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예선리그별 세부 공고문 확인 필요